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5 선고 2019가합10707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관리단 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오, 한정만

피 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황진호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000,000원 및 그 중 12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7.부터, 4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39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지하5층, 지상 43층의 집합건물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기계설비업, 냉난방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1. 27. 피고들과 사이에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피고들(이하 “을”이라고 한다) 간에 다음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계약내역

1. 공사명 : A 냉방 난방 시스템 설치공사(시공 설치도면 및 견적서에 준함)
2. 계약일자 : 2018년 11월 27일
3. 착공일자 : 2018년 12월 4일

4. 준공일자 : 2019. 3. 3.(계약 후 90일 이내)

제2조 : A 냉방난방 시스템 설치공사(에너지절감 냉방 난방 시스템, 공기열 이원 히트펌프)

1. A 냉방 난방 시스템 설치공사 계약 금액(공기열 이원히트펌프 구매설치 및 배관공사)

일금 : 1,205,000,000원(부가세포함)

2. “갑”의 기성 지불내역은 아래 사항과 같이 체결한다(부가세 포함)

(1) 계약금 일금 : 568,500,000원(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이행 10일 이내)

(2) 중도금 일금 : 395,500,000원 에너지절감 냉난방시스템 공기열 이원 히트펌프 및
기자재 완제품 현장 도착일로부터 10일 이내

(3) 잔금 일금 : 241,000,000원 설치공사 및 시운전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조 : 계획안 합의 사항

제출도면 및 견적서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단, 변경 및 증감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견적서 단가 금액을 준하여 별도 산출하여 ‘갑’과 ‘을’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 하자보수

본 조항은 책임시공을 원칙하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기초로 하며 그 각론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적으로 “갑”의 고의나 실수로 기인한 사항은 제외된다.

2.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배관공사 히트펌프기계 증발기는 3년으로 하고, 펌프 및 모터 기타 전기제품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별첨

- 계약금액 : 1,20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120,500,000원(부가세 포함)

- 하자보증금 : 계약금액의 3/100 36,150,000원

- 지분률 : (주)B 80% 964,000,000원, (주)C 20% 241,000,000원

※특이사항 : 주계약자는 (주)B이며 모든 보증서는 (주)B에서 발급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2018. 12. 4.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9. 4. 1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도서를 전달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부분을 정산한 금액(이하 ‘변경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은 29,120,000원이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2. 7. 120,500,000원, 2018. 12. 20. 448,000,000원, 2019. 2. 15. 395,500,000원 합계 9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율 감정

이 사건 건물 공기열 이원설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고 한다), 하절기의 경우 기존 냉동기에 비하여 이 사건 공사로 설치한 히트펌프(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고 한다)를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이 대략 35% 높게 산출되고, 동절기의 경우 기존 난방기보다 히트펌프를 가동할 경우 가스 및 전기요금이 2019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대략 40% 정도, 2022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대략 60% 정도 낮게 산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 26호증, 을 제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설치하면 냉방은 20~30%, 난방은 60~7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이 사건 냉난방기는 소음을 적게 발생시키므로 설치하더라도 소음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설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유발된 동기의 착오 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냉난방기 사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① 에너지효율보고서(TAB) 작성, ② 실외기 설치 안전보고서 작성, ③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 인허가 등록(구청), ④ 사용 전 안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류심사, 완성검사 등 일체 포함), ⑤ 심야전기 사용기기 등록 및 사용 허가(한국전력), 이하 '이 사건 각 인허가 업무'라고 한다]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이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인허가 업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7.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가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2) 에너지 절감효율 또는 절감액에 관한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의 착오가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되었는지 및 그러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Energy Savings 50~80%’라고 기재한 홍보 자료(갑 제2호증)를 제공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량은 연 평균효율 56%, 1년에 총 61,801,548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경제성 검토 보고서(갑 제4호증), 1년에 48,943,122원의 연료비(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기재한 연료비 절감 내역서(갑 제5호증)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기존 냉난방기에 비하여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35% 높게 산출되고, 동절기에는 가스 및 전기요금이 2019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대략 40% 정도, 2022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대략 60% 정도 낮게 산출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가 전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냉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효율이나 절감액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자료에 특정한 조건 하에 예상 에너지 절감효율이나 절감액을 계산한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재된 예상 에너지 절감효율이나 절감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들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이 제공한 에너지 절감효율이나 절감액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에너지 절감효율이나 절감액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관련 기초자료를 요청하자, 2018. 2.경 냉난방기 교체를 검토하면서 (사)F로부터 받은 냉·난방설비교체 경제성 검토자료를 전달하였다(을 제3호증). 이에 의하면, 보일러 및 터보 냉동기의 내구연한은 조달청 고시 제2014-12호에 보일러 11년, 터보냉동기 10년인데, 이 사건 건물의 기존 보일러 및 터보냉동기는 2007년도에 설치되어 12년째 사용 중이며,

냉난방 설비 모두 내구연한이 지나 경년변화에 따른 내부부식, 성능저하 및 그에 연결된 배관의 소손(부식 및 핀홀 발생)으로 유지보수 및 운용비용 증가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냉난방기는 2018. 2.경 당시 내구연한을 모두 초과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미 냉·난방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얼마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고 C는 2018. 10. 31. 원고가 준 자료를 토대로 냉방요금의 경우,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상승을, 난방요금의 경우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종전 보일러를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난방기로 교체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료비 절감효과를 각 전제로 계산하여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경제성 검토 결과보고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냉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난방 에너지 절감량은 연 평균효율 56%, 1년에 총 61,801,548원을 절감시킬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는 '※귀사가 제공해준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준비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와 전기 단가 등의 가격 변동시에는 절감금액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두었다.

한편 피고들은 연료비 절감 내역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냉난방기(160마력)를 2대 설치한 후 1일 15시간 가동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연료비(에너지) 내역'으로 1년에 48,943,122원의 연료비(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연료비 절감액을 계산하는 조건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사용하는 연료 최고 31,252㎥, 최저 4,090㎥ 온수용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토대로 적용하였으며, 기존보일러 효율은 75%, 이 사건 냉난방기 효율은 cop 3.13, 3.38, 3.68로서 계절별 외부기온 변동에 따라 효율 변화율을 적용하고, 기존연료 단가는 2018년 5월 단가를 적용, 전기요금 단가는 2018년 계절별 변동 단가를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연료단가나 전기요금 가격 변동시에는 절약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 연료사용량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절약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라고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두었다.

위 각 경제성 검토 결과보고서, 연료비 절감 내역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건을 적용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냉난방기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로서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경제성 검토 결과보고서 및 연료비 절감 내역서에 주의사항으로서 에너지 절감효율 또는 절감액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보고서 및 내역서에 기재된 에너지 절감효율이나 절감액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냉방은 20~30%, 난방은 60~70%의 에너지 절감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제출도면 및 견적서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견적서(갑 제6호증)'에는 '당사 히트펌프 시스템은 1. 스마트폰 원격 제어방식 적용, 2. 편리성, 언제 어디서나 제어 가능함, 3. 타사 제품보다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피고들이 2019. 5. 22. 이 사건 건물 소유주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자료(갑 제16호증)에 '에너지절감 냉방운전시 20~30%, 난방 운전시 60~70%'라고 기재하여 두고, 그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발표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냉난방기가 시공된 이후 그 공사 경과를 보고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발표 중에 밝힌 에너지 절감효율 및 절감액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냉난방기의 소음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었는지 및 그러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내용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가 원고에게 제공한 홍보 자료(갑 제2호증)에 '이 사건 냉난방기의 히트펌프를 분리형으로 설치할 경우 소음이 적어 대용량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냉난방기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기로 한 냉난방기는 '공기열 이원 히트펌프 G 160마력

냉각기(4대)‘이다(갑 제6호증).

②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피고 C가 제공한 홍보 자료(갑 제2호증)에는 각 제품명 및 압축기 용량별 소음측정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이원히트펌프 160HP(Horse Power, 마력)의 소음측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 (단위 : db)

외기 온도	-38℃ 난방운전	-35℃ 난방운전	-30℃ 난방운전	-25℃ 난방운전	-20℃ 난방운전	-15℃ 난방운전	-7℃ 난방운전	0℃ 난방운전	7℃ 난방운전	35℃ 냉방운전
소음 측정량	92.32	89.53	90.21	92.19	98.52	101.99	108.93	118.73	124.00	136.46

③ 원고가 이 사건 냉난방기의 가동시 소음을 측정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2] (단위 : db)

측정일시	4층	5층	6층	7층	8층	WBC 입구	1층 흡연장
2019. 7. 19. 00:00	63.2	66.2	68.0	67.2	65.0	56.2	64.2
2019. 7. 19. 03:00	64.0	67.4	67.8	68.2	67.2	56.2	63.0
2019. 7. 25. 00:00	63.0	64.5	65.0	63.2	64.0	59.7	65.0
2019. 7. 25. 03:00	62.8	64.5	65.0	65.0	64.5	56.2	64.0
2019. 7. 25. 14:26	65.5	68.4	68.4	69.3	66.5	59.7	62.5

④ 위 [표 1], [표 2]를 비교하여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냉난방기의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냉난방기가 설치된 이후 실제로 발생한 소음의 정도는 앞서 고지된 소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기망행위에 의한 취소 가부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참조).

2) 에너지 절감효율 또는 절감액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경제성 검토 결과보고서, 연료비 절감 내역서는 각 주의사항으로서 에너지 절감효율 또는 절감액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둔 점,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하절기의 경우 기존 냉동기에 비하여 이 사건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이 대략 35% 높게 산출되기는 하나, 동절기의 경우 기존 난방기보다 이 사건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가스 및 전기요금이 2019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대략 40% 정도, 2022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대략 60% 정도 낮게 산출된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냉난방기의 에너지 절감효율 또는 절감액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냉난방기의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냉난방기가 설치된 이후 실제로 발생한 소음의 정도는 앞서 고지된 소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냉난방기의 히트펌프를 분리형으로 설치할 경우 소음이 적어 대용량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냉난방기의 에너지 절감효율 및 절감액이나 이 사건 냉난방기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음량에 관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가부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2019. 5. 24.자 회의록(갑 제15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 C[1억 9천만원(VAT별도) 금액 지급 요청함]'이라는 기재 하단에 '인허가 서류 제출', '실외기 구조물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TAB 관련 8월 중 시행하여 보고서 제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인허가업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라거나,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인허가 업무를 먼저 이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각 인허가 업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잔금 지급기한을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8호증).

② 위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 요청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이행의무로서 잔금을 지급하라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의 법적인 지위에 불안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 C가 이 사건 각 인허가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에 선행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주계약자는 피고 B이고 그 공사대금의 지분율도 피고 B이 80%, 피고 C가 20%인바, 피고 C가 이 사건 각 인허가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잔금 지급의무에 선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근찬, 판사 허유정, 판사 정성희